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노인의 날’ 명칭을 ‘조부모와 노인의 날’ 로 변경 등 》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459호)
- 김태선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502호)
- 곽상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319호)

2025.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5
1. ‘노인의 날’ 명칭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변경 (김미애의원안)	5
2.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따른 제재처분 상한 명시 (김태선의원안)	10
3. 노인 급식 지원 강화 및 노인복지관을 별도의 노인복지시설 로서 재분류(곽상언의원안)	15
※ 참고 자료	
1. 법정기념일 현황	32
2. 노인복지관 사업 및 프로그램 예시	38
3. 시도별 노인복지관 설치현황	39

I. 개요

1.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45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8. 28.
- (3) 회 부 일 : 2025. 8.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의 2024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람 중 46.3%가 조부모에 해당할 정도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조부모의 육아 참여가 증가하며 가정에서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조부모의 기여가 중요해지고 있으나, 조부모를 특별히 기리는 별도의 기념일은 없음.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14개 국가에서 조부모의 날을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으며, 2021년 바티칸에서는 조부모와 노인의 역할을 기리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제정하였음.

이에 노인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조부모의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을 기리고, 세대 간의 통합과 존중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노인의 날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2.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50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태선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5. 8. 29.
- (3) 회 부 일 : 2025. 9. 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중대하게 제한할 수 있는 침익적 행위이므로 「행정기본법」은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하여 사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재처분의 상한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9조의3제2항).

3. 광상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31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광상언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9. 26.
- (3) 회 부 일 : 2025. 9.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고령화로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복지관은 사업영역을 점차 확대하여 교양·여가 관련 서비스뿐만 아니라 돌봄·평생교육·건강증진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기관으로 변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노인복지관은 여전히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어 노인복지관의 실질적인 역할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한편 경로식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노인급식의 경우 가파른 물가 상승에 비해 급식 지원 단가가 낮고 급식에 필요한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노인복지관의 명칭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아닌 별도의 노인복지시설로 규정하고 그 역할을 구체화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식당 급식 등 노인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되, 급식 지원 시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여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노인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39조의 22·제39조의23 신설 등).

Ⅱ. 검토 의견

1. ‘노인의 날’ 명칭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변경(김미애 의원안 제6조제1항)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조부모의 사회와 가정에 대한 기여를 기리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노인의 날’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6조(노인의 날 등) 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u>노인의 날</u> 로, 매년 10월을 <u>경로의 달</u> 로 한다.	제6조(조부모와 노인의 날 등) ① ----- ----- <u>높이고, 가정과 사회에서의 조부모의 역할과 중요성을 기리기 위하여</u> ----- ----- <u>조부모와 노인의 날</u>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검토 사항

-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람 중 46.3%가 조부모에 해당할 정도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조부모의 육아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

< 부모 이외의 양육지원자: 아이 직접 돌보기 >

(단위: %)

최연소 자녀구분	아이 친조부모	아이 외조부모	아빠의 형제자매	엄마의 형제자매	이웃, 엄마·아빠 친구	기타	없음
전 체	15.8	30.5	0.9	3.1	1.1	2.6	46.0
영아(0~3세)	15.4	31.8	1.2	3.5	0.6	3.0	44.4
유아(4~6세)	16.7	28.1	0.3	2.1	1.9	1.9	48.9

* 자료: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가정에서만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조부모의 기여가 중요해지고 있으나 조부모를 명시적으로 기리는 별도의 기념일은 없고, 조부모와 관련한 기념일로는 ‘어버이날’, ‘노인의 날’이 있음.

< 조부모 관련 법정 기념일 현황 >

법정 기념일	근거법률	주요행사	참석대상
어버이날(5.8.)	노인복지법 (제6조)	◦ 효행실천 유공자 포상 등	◦ 효행실천유공자·가족 ◦ 카네이션대상자 ◦ 노인단체·독거노인센터 등
노인의 날(10.2.)	노인복지법 (제6조)	◦ 장수지팡이 증정 ◦ 유공자 포상 등	◦ 유공자·가족 ◦ 대한노인회 등

* 자료: 보건복지부

□ 참고로, 2021년 바티칸공화국은 조부모와 노인의 역할을 기리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하고자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7월 25일)을 지정하였고, 미국에서도 1978년 조부모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하고 세대 간의 유대를 강화할 목적으로 미국 노동절(9월 첫 번째 월요일) 이후 다가오는 일요일을 ‘조부모의 날’로 지정한 바 있음.

< 조부모 관련 기념일 해외 사례 >

구 분	대한민국	미국	일본	영국	바티칸
조부모	—	조부모의 날 (9월 노동절 이후 첫번째 일요일)	—	조부모의 날 (10월 첫번째 일요일)*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7.25.)
노인	노인의날 (10.2.)	노인의날 (10.1.)	경로의날 (9월 세 번째 월요일)	노인의날 (10.1.)	
부모	어버이날 (5.8.)	어머니의날 (5월 두번째 일요일) 아버지의 날 (6월 세번째 일요일)		어머니의날 (3월 네번째 일요일) 아버지의 날 (6월 세번째 일요일)	—

* 1990년 제45차 유엔 총회에서 10월 1일을 ‘국제 노인의 날’로 지정하였고, 우리나라는 1997년에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인 점을 고려하여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함.

* 영국은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가 기념

* 자료: 보건복지부

□ 이처럼 육아 등에 대한 조부모의 기여와 함께, 출산율 저하 및 핵가족화에 따라 조부모·부모·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의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개정안을 통해 조부모의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을 기리고, 세대 간의 통합과 존중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가구원수의 감소와 가족형태의 추이(1970~2020) >

(단위: 명, %)

구 분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평균 가구원수(명)			5.2	4.5	3.7	3.1	2.7	2.3
가족 형태 (%)	핵가족	부부	5.4	6.4	9.3	14.8	20.6	24.2
		부부·미혼자녀	55.5	56.5	58.0	57.8	49.4	45.9
		한부모·미혼자녀	10.6	10.0	8.7	9.4	12.3	10.2
	직계 가족	부부·양(편)친	1.4	0.6	0.9	1.2	1.2	1.1
		부부·자녀·양(편)친	17.4	10.4	9.3	6.8	5.0	3.6
	기타		9.7	16.1	13.8	10.1	11.6	15.0

* 자료: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 한편, ‘노인의 날’은 1990년 제45차 UN총회에서 10월 1일을 ‘세계 노인의 날’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추진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우 어버이날에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에게도 감사하는 방식으로 기념을 행하고 있다는 점 등도 고려하여, 현행법상 어버이날의 목적에 조부모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노인복지법」 상 기념일 관련 규정 >

제6조(노인의 날 등) 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②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③~④ (생략)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어버이날은 각 세대의 측면에서는 부모를 기리는 날이나 전체 세대의 측면에서는 혈연관계에 있는 윗대 조상 모두를 기리는 날로 그 의미를 확장할 수 있으므로, 조부모만을 따로 떼어서 기념하는 것은, 조부모와 부모(어버이날)만으로 한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 및 단체 의견 >

보건 복지부	◦ '조부모'를 기리는 별도의 날 별도 지정은 실익이 적음 - 현행 노인복지법은 10월 2일을 노인의 날,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음 - '노인의 날'은 혈연관계와 무관하게 '사회의 어르신'을 기리는 날로, '어버이날'은 '혈연관계 내에서 부모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전하는 날'로 이해할 수 있음 - 다만, 어버이날은 각 세대의 측면에서는 부모를 기리는 날이나, 전체 세대의 측면에서는 혈연관계에 있는 윗대 조상 모두를 기리는 날로 그 의미를 확장할 수 있으므로, 조부모만을 따로 떼어서 기념하는 것은, 조부모와 부모(어버이날)만으로 한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별도 기념의 실익은 적다고 판단됨 - 한편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할 때, '혈연관계의 윗대 조상을 모두 기리는 날(어버이날)'과 '혈연관계와 무관한 사회의 어르신을 기리는 날(노인의 날)'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있음
행정 안전부	◦ 기념일 신규 지정이 아닌 기존 기념일 명칭 변경의 경우(노인의 날 → 조부모와 노인의 날) 특별한 의견 없음
대한 노인회	◦ '노인의 날'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개정하는 것에 명시적 반대의견은 없으나, '조부모와 노인의 날' 용어가 다소 부자연스러우므로, 다른 용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예, 경로의 날, 어르신의 날 등)

2.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따른 제재처분 상한 명시

(김태선의원안 제39조의3제2항)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하여 사업 정지 등 제재처분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제2항).

현행	개정안
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생략)	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경우</u>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 ----- ----- <u>경우 6개월의 범위</u> <u>에서</u>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검토 사항

- 현행법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는 등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노인복지법」 상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제재처분 관련 규정 >

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u>.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5.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교육 이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u>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

- 하지만, ‘사업의 정지 기간 상한’은 「노인복지법」에서 명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 제39조의3제4항의 위임에 따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11]에서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 위반 등에 대하여 ‘사업정지 기간’을 1개월로 규정하고 있음.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상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제재처분 관련 규정 >

제31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9조의3제4항 및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별표 11]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사업정지 부분만 발췌)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경우					
나. 별표 10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u>지정기준 중 시설기준 또는 직원배치기준</u> 을 위반한 경우	법 제39조의3제2항 (시행규칙 제29조의10제1항)	<u>사업정지 1개월</u>	지정 취소		
다. 별표 10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u>지정기준 중 학습교구기준</u> 을 위반한 경우	법 제39조의3제2항 (시행규칙 제29조의10제1항)	경고	<u>사업정지 1개월</u>	지정 취소	
7. 감독위반					
나. 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42조에 따른 <u>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u>		경고	<u>사업정지 1개월</u>		

< 연도별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사업정지 건수(2020~2024) >

(단위: 건)

위반사항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u>지정기준 중 시설기준 또는 직원배치기준</u> 을 위반한 경우	2	3	6	9	4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u>지정기준 중 학습교구기준</u> 을 위반한 경우	5	1	4	8	0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42조에 따른 <u>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u>	48	53	46	72	20
합 계	55	57	56	89	24

□ 한편, 「행정기본법」은 종전까지 행정법 분야에서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기본법이 없어 공무원과 국민이 행정법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개별 법률마다 유사 제도가 서로 다르게 규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행정법 제도에 관한 통일적 규정을 마련하고자 2021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동법 제5조제2항에서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행정기본법」의 원칙과 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제재처분 상한’ 관련 「행정기본법」 규정 >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2. 위반행위의 결과
3. 위반행위의 횟수

□ 개정안은 제재처분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행정기본법」 제22조의 취지를 반영하여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한 사업의 정지 처분을 할 때 그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시하

려는 것으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행정처분의 최대수준이 사업정지 1개월임을 고려할 때, 상한 6개월은 적정수준인 것으로 보이는데, 「아동복지법」에서도 아동복지시설이나 교육훈련시설에 대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업 정지 상한 관련 입법례 >

근 거 법 률		법률상 상한	시행규칙(행정처분의 기준) 상 최대수준
노인 복지법	인권교육기관 (제6조의3)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인권교육 수행능력 현저히 부족 시 등)
	노인복지시설 등 (제43조)	1개월	사업정지 20일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검사 거부·방해·기피 시 등)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제39조의3)	—	사업정지 1개월 (시설기준 또는 직원배치기준 위반 시 등)
아동 복지법	아동복지시설· 교육훈련시설 (제56조)	6개월	사업정지 6개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등)

- 참고로,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거주시설의 사업 정지 기간을 6개월 범위로 한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2505호)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상한을 6개월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3. 노인 급식 지원 강화 및 노인복지관을 별도의 노인복지시설 로서 재분류(광상언의원안 제30조의2 등)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국가 등으로 하여금 노인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경로식당 급식 등 노인의 영양개선을 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면서,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급식 최저 단가를 급식지원에 반영하도록 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을 별도의 노인복지시설로서 재분류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39조의22·제39조의2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신설>	제30조의2(급식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 및 체력의 증진을 위하여 경로식당 급식 등 노인의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1항에 따른 급식 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지원 기준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신설>

제31조의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각 호-----.

1. ~ 7. (현행과 같음)

8. 노인종합복지관

제31조의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37조제2항, 제39조제2항 및 제39조의23제2항-----.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

<삭제>

목적으로 하는 시설

2.·3.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신 설>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2(노인종합복지관) 노인

종합복지관은 지역사회 내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 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노인종합복지관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3(노인종합복지관의 설

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

제40조(변경·폐지 등) ①·②
(생략)

③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노인
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
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
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 중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
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정
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
여야 한다.

④ (생략)

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장, 노
인의료복지시설의 장,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장 또는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는

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노인종합복지관의 시설, 인
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
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변경·폐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자,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
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한
자-----

-----.

④ (현행과 같음)

⑤ -----
-----노인여
가복지시설의 장, 재가노인복지
시설의 장 또는 노인종합복지
관의 장-----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① (생 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老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7조제4항 또는 제39조제4항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 5. (생 략)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제1항에 따라 사업이 정지 또는 폐지되거나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2항에 따라 사업이 정지 또

-----.

⑥ (현행과 같음)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종합복지관-----

-----.

1. 제37조제4항, 제39조제4항 또는 제39조의2제4항-----

2. ~ 5. (현행과 같음)

③ -----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종합복지관-----

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45조(비용의 부담)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1. 2. (생 략)

3. 제33조제1항·제35조제1항·
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
용

제46조(비용의 수납 및 청구) ①
~ ⑥ (생 략)

⑦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
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자가 그 시설
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
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비용의 부담)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
제37조제1항·제39조제1항 및
제39조의23제1항-----

제46조(비용의 수납 및 청구)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노인여가복지시설, 제3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
시설 또는 제39조의2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종합복지관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 -----.
⑧ (생략)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2. ~ 6. (생략)	⑧ (현행과 같음) 제57조(벌칙) ----- ----- ----- -----. 1. ----- 제37조제2항, 제39조제2항 또는 제39조의2제2항----- ----- ----- ----- --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종합복지관----- 2. ~ 6.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검토 사항

(1) 노인 급식 지원 강화

- 개정안은 노인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로식당 급식 등 노인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면서, 급식지원 시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급식최저단가를 반영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금번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이 현행 「아동복지법」에도 규정되어 있음.

< 「아동복지법」 상 급식 지원 관련 규정 >

-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참고로, 현행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에 근거하여, 결식 우려 노인에게 대한 무료급식 지원 사업(경로식당 무료급식,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음.

<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

구분	경로식당 무료급식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급식 대상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55~59세의 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 이상 노인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55~59세의 자 등
급식 기관	◦ 경로식당(일일평균이용자 수 20인 이상, 주 3회 이상 급식/지역여건 고려시 이용자 20인 이상[읍·면지역 10인 이상], 주1회 이상 급식 가능)	◦ 밥, 국, 밑반찬, 죽 등 가정식·치료식(당뇨병, 고혈압) 등 제공
비용 징수	◦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독거노인 포함) 무료, 그 외 실비	

* 자료: 「2025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 한편, 경로당 부식구입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담은 개정 「노인복지법」¹⁾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노인 급식 지원 관련 국가의 책임이나 지원에 관한 현행법상 규정이 없고, 아울러 급식단가가 낮고²⁾ 지역별 편차도 크므로, 개정안과 같이 노인 급식 지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면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 수준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음.

□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1) 「노인복지법」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및 부식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2) 「2022 공공급식 활성화를 통한 먹거리보장 강화 방안 연구」(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2022)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급식단가는 지역아동센터·요양원 2,496원, 어린이집 1,900원, 초중고 3,046원, 군대 3,500원, 정부·공공기관 2,452원 등으로 조사되었음.

< 2024년도 지역별 급식 단가 현황 >

(기준: 2024. 12. 31. 기준 / 단위: 원)

시 도	경로식당 무료급식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서울특별시	4,000~5,500	4,000~6,000
부산광역시	3,500~4,000	3,500~4,000
대구광역시	3,500	2,300~14,500
인천광역시	3,500	3,500
광주광역시	4,000	4,000
대전광역시	4,000	4,000
울산광역시	3,500	4,000~5,500
세종특별자치시	미운영	5,000
경기도	4,000	4,000~8,000
강원특별자치도	3,000~6,000	3,500~11,000
충청북도	3,500~5,000	2,500~9,500
충청남도	3,500~5,000	3,500~20,000
전북특별자치도	4,000~4,500	5,000~6,000
전라남도	5,500	5,500
경상북도	4,000	4,000
경상남도	3,300	2,500~15,000
제주특별자치도	5,500	5,500

* 도시락 단가는 지역별로 1일분 또는 3~5일분을 제공하거나 단백질 음료 등을 추가로 제공, 배달료 지원 등 구성이 다양하여 단가의 범위가 넓음

* 자료: 보건복지부

□ 특히, 노년기에 영양을 갖춘 식사가 가져다주는 신체적·정신적 이점을 고려할 때, 노인 대상 식사 지원이 초고령사회에서도 가급적 많은 노인이 건강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 갈 수 있게끔 하는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 요청된다³⁾는 점에서 노인 급식 지원은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겠음.

3) 「초고령사회 노인 대상 식사 지원 현황 및 과제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이 의미하는 것-」(이슈와 논점 제2245호, 국회입법조사처, 2024. 6. 12.)

- 다만,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및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2005년 지방이양되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⁴⁾으로 되어 있어 보다 원만한 입법추진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그 외, 현행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⁵⁾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된 정책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도 대안으로서 고려될 필요는 있겠음.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제1항 제2호 급식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규율 중인 급식 사업의 직접적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이 2005년 지방이양되어 지자체 자치사무에 해당하느냐, 조문 내용에서 ‘국가’는 제외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제4조제1항 단서 관련)

- 81. 경로당 운영(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과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 잔액을 사용하는 경로당 부식비 지원은 제외한다)
- 83. 경로식당 무료급식
- 84.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 5)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 의견 >

보건 복지부	◦ 급식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규율 중인 급식 사업의 직접적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이 2005년 지방이양되어 지자체 자치사무에 해당하는바, 조문 내용에서 '국가는 제외될 필요 - 아울러 노인무료급식은 ▲인력(복지관 직원, 노인일자리, 자원봉사자 등) ▲ 조리·식사 장소(복지관, 종교시설 등) ▲재원(지자체 예산, 기부금품 등) ▲제공방식(단체급식)으로 운영되어, 아동 급식과 달리 단가 산정이 어려움을 고려하여 신중 검토(제2항 및 제3항 삭제)
행정 안전부	◦ 해당 법률에 국가자치단체가 노인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을 위해 경로당에 대해 양곡 및 부식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법률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및 자치단체의 자율성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신중할 필요 * (재정자립도) '20년 50.4% → '24년 48.6%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 '20년 28.6조 → '24년 34.5조
기획 재정부	◦ 사회 복지 성격의 노인장애인·아동 복지관 운영은 지자체 사무이며,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무료급식 사업 또한 '05년 지방이양 * 영 [별표2] 83. 경로식당 무료급식 ◦ 재정과 함께 지방이양되어 보조금법에 따라 지급 제외된 사업을 국비로 지원할 경우, 재정규율과 맞지 않게 되고 과도한 국가적 부담 초래
서울 특별시	◦ 급식 단가 및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일률적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경우 지자체에 따라 부담의 정도가 상이할 수 있고, 단가 인상에 따른 예산 부담으로 급식 지원 대상이 축소되는 역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음. ◦ 또한,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노인복지관을 별도의 노인복지시설로서 노인종합복지관 으로 재분류

- 현행법상 노인복지관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서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⁶⁾로 세부적으로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 ‘건강생활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노인복지관 사업 >

기본 사업	상담	일반상담 및 정보제공, 전문상담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	위기 및 취약노인지원, 지역사회 생활자원연계 및 지원, 가족 기능지원
	건강생활 지원	건강증진지원, 기능회복지원, 급식지원
	노년 사회화 교육	평생교육지원, 취미여가지원
	지역자원 및 조직화	지역자원개발, 지역복지연계, 주거지원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사회참여지원, 노인권익증진, 고용 및 소득지원
선택 사업	돌봄	요양서비스
	기타	제시되지 않은 사업 자체 수행 가능

* 자료: 「2025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 참고로, 2024년 기준 전국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은 70,935개소가 운영 중이고, 이중 노인복지관은 454개소임.

6) 「2025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1」

<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60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2020~2024) >

(단위: 개소, 만명,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대상자)	69,005	68,874	69,838	69,425	70,935
노인복지관 (60세 이상의 자)	398	408	418	408	454
경로당 (65세 이상의 자)	67,316	67,211	68,180	67,792	69,260
노인교실 (60세 이상의 자)	1,291	1,255	1,240	1,225	1,221
60세 이상 노인인구	1,245만명	1,299만명	1,395만명	1,415만명	1,445만명
비중(%)	24.1%	25.1%	27.0%	27.3%	28.2%

* 자료: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 그리고,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법에 독립적인 시설로 규정된 노인복지회관(現노인복지관)은 1997년 ‘1개 시설이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부시설 명칭이 아닌 제공 서비스 종류로 개편되면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된 바 있음.

<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노인복지관의 변화>

1981년 제정법	1989년 전부개정	1997년 전부개정	2004년 일부개정	2007년 일부개정
○ 노인복지시설 - 양로시설 - 노인요양시설 - 유료양로시설 - 노인복지회관	○ 노인복지시설 - 양로시설 - 노인요양시설 - 실비양로시설 - ~~실비노인요양시설~~ - 유료양로시설 - ~~유료노인요양시설~~ - 노인복지회관 -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회관 - 경로당 - 노인교실 - 노인휴양소 -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회관 - 경로당 - 노인교실 - 노인휴양소 -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 경로당 - 노인교실 - 노인휴양소 ⁷⁾ -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여가시설 - 경로당 - 노인교실 - 노인휴양소			

* 자료: 보건복지부

□ 한편,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저렴한 비용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었던 노인복지관⁸⁾은 고령화에 따라 건강·일자리·돌봄 등 사업이 확대되면서도 제도상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머물러 있어 종합적 노인복지서비스 전달기관으로서의 기반과 위상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노인복지관 사업의 주요변화 >

	2007년	2014년	2018년	2023년
기본사업	- 사회교육 - 노인일자리 - 보건·재활 증진 - 상담지도 - 자원봉사활성화 - 노인건강운동 - 경로당연계 프로그램지원	- 평생교육 지원 - 취미여가 지원 - 고용지원 - 기능회복 지원 - 정서생활 지원 - 사회참여 지원 - 독거노인지원 - 취약노인보호 핫라인구축	- 평생교육 지원 - 취미여가 지원 - 건강생활지원 (치매예방 포함) - 상담·정보제공 - 사회참여 지원 - 위기·독거노인지원 - 정서·사회생활 지원 - 지역자원 개발·연계 - 노인권익증진	- 상담 -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 - 건강생활지원 - 노년사회화교육 - 지역자원 및 조직화 -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선택사업	- 재가복지 - 경로식당·식사배달 - 방문보건 - 목욕서비스	- 건강생활지원 (기능회복지원 제외) - 주거지원 - 소득지원 - 가족기능지원 - 가족통합지원 - 지역자원개발 - 지역복지연계 (경로당혁신) - 노인권익증진	- 건강생활지원 (기능회복지원, 급식지원) - 고용·소득지원 - 가족기능지원 - 가족통합지원 - 돌봄 요양서비스	- 돌봄 요양서비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사업

* 자료: 보건복지부

7) 2011년 6월 7일 일부개정을 통해 삭제됨.

8) 「노인복지법」(법률 제3453호, 1981.6.5. 제정) 제13조(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4. 노인복지회관·무료로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교양·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다만, 개정안에서는 노인복지관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수정하면서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벗어나 별도의 노인복지시설 유형으로 재분류하는 가운데, 현행의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과 개정안의 내용적 차별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노인복지관 기능 비교 >

현행(제36조제1항제1호)	개정안(제39조의22)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 내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관은 현재도 이용노인의 욕구 및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여가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분리할 법률 개정의 실익이 적다는 입장임.

< 개정안에 대한 관련단체 의견 >

한국노인 종합복지관 협회	◦ 1997년 전부개정된 노인복지법에서 '노인복지회관'은 건강의 증진·교양·오락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정의. 그러나 2007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등 종합적 노인복지 주요전달체계로써의 종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기능과 역할이 전환됨. 명칭변경과 함께 기능과 역할이 변경되고 사업이 확대되었으나 현행 노인복지법 시설분류는 여전히 20년전에 머물러 있음. ◦ 여가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던 노인복지관에 대해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용어와 정의를 개정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함.
---------------------	---

문 의 처

02) 6788-5499

【참고1】	법정기념일 현황 (총 147개, 보건복지부 소관 30개) (기준: 2025. 10.31. / 자료: 행정안전부)
--------------	---

연번	명 칭	기념일	주관부처	근거법령 등
1	해양안전의날	매월 1일	해양수산부	해사안전법
2	안전점검의 날	매월 4일	행정안전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3	한국수어의 날	2.3.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수화언어법
4	한국수어 주간	한국수어의 날이 속한 주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수화언어법
5	문화유산 방재의날	2.10.	국가유산청	문화재보호법
6	희귀질환 극복의 날	2월의 마지막날	보건복지부	희귀질환관리법
7	국립공원의 날	3. 3.	환경부	자연공원법
8	여성의 날	3. 8.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9	흙의 날	3.11.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어업법
10	의용소방대의 날	3.19.	소방청	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	암 예방의 날	3.21.	보건복지부	암관리법
12	결핵 예방의 날	3.24.	질병관리청	결핵예방법
13	수산인의날	4. 1.	해양수산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14	보건의 날	4. 7.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15	전기의 날	4.10.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산업발전기본법
16	편의증진의 날	4.10.	보건복지부	장애인등편의법
17	도시농업의 날	4.11.	농림축산식품부	도시농업법
18	도서관의 날	4.12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법
19	도서관 주간	4.12.부터 1주간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법
20	국민안전의 날	4.16.	행정안전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21	장애인의 날	4.20.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22	장애인 주간	4.20.부터 1주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23	자전거의 날	4.22.	행정안전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24	새마을의 날	4.22.	행정안전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25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4.28.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6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	4.28.부터 1주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7	스포츠 주간	4월 마지막 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기본법

연번	명 칭	기념일	주관부처	근거법령 등
28	청소년의 달	5월	여성가족부	청소년기본법
29	가정의 달	5월	여성가족부	건강가정기본법
30	근로자의 날	5. 1.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31	씨름의 날	음력 5.5.	문화체육관광부	씨름진흥법
32	어린이 날	5. 5.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33	어버이 날	5. 8.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34	유권자의 날	5.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35	유권자 주간	5.10.부터 1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36	바다식목일	5.10.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법
37	한부모가족의 날	5.10.	여성가족부	한부모지원법
38	양잠인의 날	5.10.	농림축산식품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9	입양의 날	5.11.	보건복지부	입양특례법
40	입양주간	5.11.부터 1주일	보건복지부	입양특례법
41	식품안전주간	5.7.~5.2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기본법
42	식품안전의 날	5.1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기본법
43	가정의 날	5.15.	여성가족부	건강가정기본법
44	발명의 날	5.19.	특허청	발명진흥법
45	세계인의 날	5.20.	법무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46	세계인주간	5.20.부터 1주간	법무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47	문화다양성의 날	5.2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48	문화다양성 주간	5.21.부터 1주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49	방재의 날	5.25.	행정안전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50	실종아동의 날	5.25.	보건복지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	실종아동주간	5.25.부터 1주간	보건복지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2	의료기기의 날	5.29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
53	중소기업주간	5월 셋째 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법
54	통일교육주간	5월 넷째 주	통일부	통일교육지원법
55	남녀고용평등강조기간	5.25.~5.31.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56	해외파병용사의 날	5.29.	국가보훈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연번	명 칭	기념일	주관부처	근거법령 등
57	환경교육주간	환경의 날(6.5.)이 포함된 1주간	환경부	환경교육법
58	국악의 날	6. 5.	문화체육관광부	국악진흥법
59	구강보건의날	6. 9.	보건복지부	구강보건법
60	기록의 날	6. 9.	행정안전부	공공기록물법
61	헌혈자의 날	6.14.	보건복지부	혈액관리법
62	노인학대예방의 날	6.15.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63	해양조사의날	6.21.	해양수산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64	선원의 날	6월 셋째 주 금요일	해양수산부	선원법
65	전자정부의 날	6.24.	행정안전부	전자정부법
66	마약퇴치의 날	6.26.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67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6.28.	통일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68	사회적기업의 날	7. 1.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법
69	사회적기업 주간	7.1.부터 1주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법
70	협동조합의날	7월 첫째 토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본법
71	협동조합 주간	협동조합의 날 이전1주간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본법
72	여성기업주간	7월 첫째 주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73	도농교류의 날	7. 7.	농림축산식품부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74	방위산업의 날	7. 8.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5	인구의날	7.11.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76	연안안전의 날	7.18.	해양경찰청	연안사고예방법
77	연안안전점검 주간	7월 셋째 주	해양경찰청	연안사고예방법
78	유엔(UN)군 참전의 날	7.27.	국가보훈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79	섬의 날	8. 8.	행정안전부	섬 발전 촉진법
80	이산가족의 날	추석 전전날 (음력 8월 13일)	통일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81	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림의 날	8.14.	여성가족부	위안부피해자법
82	양성평등주간	9.1.~9.7.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83	양성평등 임금의 날	양성평등주간 (9.1.~9.7.)중 하루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84	통계의 날	9. 1.	통계청	통계법

연번	명 칭	기념일	주관부처	근거법령 등
85	여권통문의 날	9. 1.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86	태권도의 날	9. 4.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87	지식재산의 날	9. 4.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재산기본법
88	고향사랑의 날	9. 4.	행정안전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
89	사회복지의 날	9. 7.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90	화장품의 날	9. 7.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
91	사회복지주간	9.7.부터 1주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92	곤충의 날	9.7.	농림축산식품부	곤충산업법
93	생명나눔 주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	보건복지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94	숙련기술인의 날	9.9.	고용노동부	숙련기술장려법
95	자살예방의 날	9.10.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법
96	자살예방 주간	9.10.부터 1주일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법
97	해양경찰의 날	9.10.	해양경찰청	해양경찰법
98	산업단지의 날	9.1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99	성매매 추방주간	9.19.~9.25.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자보호법
100	연안정화의 날	9월 셋째 토	해양수산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101	청년의 날	9월 셋째 토	국무조정실	청년기본법
102	청년주간	청년의날부터 1주간	국무조정실	청년기본법
103	치매극복의 날	9.21.	보건복지부	치매관리법
104	조달의 날	9.30.	조달청	조달사업법
105	개인정보보호의 날	9.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106	군인가족의 날	9월 넷째 금	국방부	군인복지기본법
107	경로의 달	10월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108	노인의 날	10. 2.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109	동물보호의 날	10. 4.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110	세계 한인의날	10. 5.	재외동포청	재외동포기본법
111	세계한인주간	10.3.~10.9.	재외동포청	재외동포기본법
112	임산부의 날	10.10.	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113	정신건강의 날	10.10.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연번	명 칭	기념일	주관부처	근거법령 등
114	정신건강주간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115	여성어업인의날	10.10.	해양수산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116	스포츠의 날 (前체육의날)	10.15.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기본법
117	여성농업인의 날	10.15.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의2
118	호스피스의 날	10월 둘째 주 토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법
119	문화의 날	10월 셋째 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본법
120	회계의 날	10.31.	금융위원회	외부감사법
121	동반성장주간	11월 첫째 주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22	임업인의 날	11. 1.	산림청	임업진흥법
123	손상예방의 날	11. 1.	질병관리청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4	수소의 날	11. 2.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5	한글 점자의 날	11. 4.	문화체육관광부	점자법
126	한글 점자 주간	한글점자의 날이 속한 주간	문화체육관광부	점자법
127	소상공인의 날	11. 5.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기본법
128	소상공인 주간	소상공인의 날 이전1주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기본법
129	소방의 날	11. 9.	소방청	소방기본법
130	보행자의 날	11.11.	국토교통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131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날	11.11.	국가보훈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132	농업인의 날	11.1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133	약의 날	11.18.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134	아동학대예방의날	11.19.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135	아동학대예방주간	11.19.부터 1주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136	김치의 날	11.22.	농림축산식품부	김치산업 진흥법
137	민원의 날	11.24.	행정안전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138	중견기업주간	11월 셋째 주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139	가정폭력추방주간	11.25.~12.1.	여성가족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40	성폭력추방 주간	11.25.~12.1.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법
141	여성폭력추방 주간	11.25.~12.1.	여성가족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연번	명 칭	기념일	주관부처	근거법령 등
142	자원봉사자의 날	12. 5.	행정안전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143	자원봉사주간	12.5.부터 1주일간	행정안전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144	국가유산의 날	12. 9.	국가유산청	국가유산기본법
145	기부의날	12월 둘째 월	행정안전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146	기부주간	12월 둘째 주간	행정안전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147	해양재난구조대의 날	12.23.	해양경찰청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참고2】	노인복지관 사업 및 프로그램 예시(「2025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	---

I. 상담	1. 일반상담 및 정보제공	노인의 복지 정보 제공 일반상담(이용상담, 접수상담) 외부 전문가 활용 정보 제공 상담(경제, 법률, 주택상담, 연금상담, 건강상담, 세무상담)
	2. 전문상담	우울 및 자살예방프로그램, 죽음준비프로그램,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학대 및 인권, 인지 및 행동 심리 상담, 애도, 상실, 관계(부부관계, 또래관계, 자녀관계 등) 등에 대한 개별 혹은 집단 개입 등
II.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돌봄	3. 위기 및 취약노인지원	취약노인의 신체·정서·사회적 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사례관리사업,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유관기관 등과 연계(취약노인연계망구축사업)
	4. 지역사회 생활자원연계 및 지원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조정, 중재, 의뢰, 옹호, 자원연계 강화를 위한 지원 활동, 지역사회 읍면동 복지 허브화와 맞춤 돌봄에 관한 지역자원 발굴 연계
	5. 가족기능지원	노인과 관련된 가족상담, 가족관계프로그램, 가족캠프, 세대통합프로 그램 등
III. 건강생활 지원	6. 건강증진지원	건강교육, 건강상담, 건강교실(건강체조, 기체조, 요가 등), 독거노인지원 사업(기존 재가사업), 노인건강운동, 치매예방 인지활동서비스, 물리치료 등
	7. 기능회복지원	양·한방진료, 작업요법, 운동요법, ADL훈련 등
	8. 급식지원	경로식당(중식서비스), 밑반찬·도시락배달, 푸드뱅크 등
IV. 노년 사회화 교육	9. 평생교육지원	노인역량강화교육, 정보화교육, 사회화교육, 시민사회교육, 한글교실, 외국어교실, 교양교실, 인문학교육, 예비노인 은퇴준비 프로그램, 경제교육, 생애말기 준비·설계 교육, 웰다잉교육 등
	10. 취미여가지원	예능활동(음악, 미술, 생활도예, 서예, 댄스), 문화활동(연극, 사진, 영화, 바둑, 장기, 레크리에이션), 취미활동(종이접기, 손뜨개질, 민속놀이), 체육활동(탁구, 당구, 게이트볼), 동아리 활동 등
V. 지역자원 및 조직화	11. 지역자원개발	자원봉사자 발굴·관리, 후원자 개발, 외부 재정지원기관 사업 수탁 등
	12. 지역복지연계	경로당 프로그램 연계 등의 지역복지기관 연계, 지역협력사업(경로행사, 나들이 등) 등
	13. 주거지원	주택수리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도배 등) 등
VI.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14. 사회참여지원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지역 봉사활동, 교통안전봉사, 동아리·클럽 활동 지원, 교통편의서비스 등
	15. 노인권익증진	정책건의, 노인인권 옹호, 노인인식개선사업, 편의시설 설치, 노인소비자피해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성교육 등
	16. 고용 및 소득지원	고령자취업지원 사업, 취업교육, 창업지원(사회적협동조합 등)사업 등
(선택사업) 돌봄	17. 요양서비스	치매환자 프로그램, 주·야간보호 등

【참고3】	시도별 노인복지관 설치현황 (기준: 2025. 9. 30. / 자료: 보건복지부)
-------	---

(기준: 2025. 9. 30. / 단위: 명, 개소, %)

시 도	노인복지관(A)		등록회원(B)	노인복지관당 등록회원 (B/A)
		노인종합복지관 명칭 사용 (%)		
서울특별시	92	36	773,534	8,408
부산광역시	33	3	186,976	5,666
대구광역시	25	5	207,264	8,291
인천광역시	27	—	171,602	6,356
광주광역시	10	3	158,690	15,869
대전광역시	11	1	56,560	5,142
울산광역시	17	—	92,450	5,438
세종특별자치시	—	—	—	—
경기도	80	22	836,016	10,450
강원특별자치도	19	8	110,025	5,791
충청북도	25	3	117,806	4,712
충청남도	19	8	96,780	5,094
전북특별자치도	32	7	179,317	5,604
전라남도	33	2	178,334	5,404
경상북도	25	8	104,377	4,175
경상남도	20	10	88,095	4,405
제주특별자치도	3	—	1,872	624
합 계	468	116 (24.8%)	3,359,698	7,179